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(안 제77조 및 제79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